

[서식 예]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근로복지공단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대표자 이사장 △△△

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

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소외 ☆☆공업(이하'회사'라 합니다)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○○. ○. ○. 제관작업을 하던중 H빔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밀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고 상병명 요부염좌로 요양하던중 20○○. ○. ○. 상병명 '제4-5요추추간판탈출증, 제5요추-제1천추 추간판탈출증, 다발성 척추강내 협착증'등의추가상병을 확인하여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퇴행성변화에 따라발생한 개인질병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



습니다.

- 2. 이 사건 요양불승인 결정처분의 부당성
 - 가.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기까지 약 25년동안 제관, 용접등의 업무를 하여왔는바, 이 사건 이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.
 - 나. 또한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하루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작업이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입니다.
 - 다. 그런데 원고의 최초요양을 행한 ◎◎정형외과에서는 치료기간중 원고의 상병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새로운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20○○. ○. ○.에 새로운 상병을 확인하였고 20○○. ○. ○. ◇◇병원에서 제4, 5요추추 간판탈출증, 제5요추제1천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3. 2.★★병원에서 '우측제5요추신경근증요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는데, 위 진단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곧바로 확인되었다면 보다 명확하게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바, 최초의 진단서에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에는 정확한 상병의 발병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원고의 상병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.
 - 라. 원고의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지속적인 업무상의 부담으로 위 상병명이 발병한 것이고 원고의 상병명중 퇴행성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나 이 또한 원고의 업무가 기존질병을 악화시킨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병명과 업무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잘못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추가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결정

1. 갑 제2호증

심사결정서

1. 갑 제3호증

재결서

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1. 납부서1통

2000. 0. 0.

원 고 ㅇ ㅇ ㅇ (인)

○○행정법원 귀 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